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6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배현진·박정훈·강선영

정희용 · 김대식 · 고동진

정성국 · 박정하 · 우재준

박수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 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 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 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2).

법률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완성보증계정의"를 "문화산업보증계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성보증업무를"을 "문화산업보증업무를"로, "완성보증계정을"을 "문화산업보증계정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완성보증계정을"을 "문화산업보증계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문화산업보증계정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문화산업보증"이란 문화산 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 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 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 증을 말한다. 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 하는 것을 말한다. 14. ~ 21. (생 략) 14. ~ 21.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계정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설치 등) ①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 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 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산업보증업무를---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

<u>을</u>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 리를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u><신 설></u>

②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 금·보증수수료 등의 수입·운 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u>완성보증계정</u>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u>산업보증계정을</u>
1.•2. (현행과 같음)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
<u>무역보험공사</u>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문화산업보증
계정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③문화산업보증
계정을
④ 그 밖에 문화산업보증계정
의 석치 우영 및 과리 등에 픽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